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2018. 5. 23.



-
- 작성자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2-2670-9223)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실태조사 개요	1
2. 조사결과 개요	2
1) 2018년 저임금 조합원 평균 임금액과 상대적 수준	2
2) 2018년 임금항목별 수령 조합원 수 및 금액	3
(1) 급식·통근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	4
(2) 상여금	4
(3) 근속수당	5
(4) 통상수당	6
(5) 소결	6
3. 산입범위 확대 효과 분석	8
1) 분석 방법	8
2) 임금인상 삭감 효과	7
(1)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8
(2)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10
(2) 현행 + 정기 상여금	10
3)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 비율	11
(1)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12
(2)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12
(2) 현행 + 정기 상여금	13
4. 요약 및 결론	14

1. 실태조사 개요

- 민주노총 조합원 중 최저임금 1.2배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대상 조합원은 고용형태, 연령,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해 해당 연맹 담당자가 배포·회수함.
- 저임금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함. 2018년 기준, 60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실태조사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관리·지원 55.5%, 교육 19.8%, 도매·소매 10.1% 등임. 사업관리·지원 업종 비중이 절반을 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면서, 동시에 청소, 경비, 주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빌딩 청소, 대학 청소, 지하철 청소, 경비, 대학 주차 등임.

[표-1] 2018년 설문조사 업종별 비중(단위: 명, %)

업종		응답자	비중
제조		18	3.0
음식·숙박		23	3.8
교육		118	19.6
단체·수리·개인		44	7.3
도매·소매		61	10.1
사업관리·지원	계	334	55.5
	빌딩 청소	40	6.6
	대학 청소	119	19.8
	지하철 청소	52	8.6
	대학 주차	13	2.2
	경비	110	18.3
출판·영상·통신		4	0.7
계		602	100

- 설문내용은 사업장별로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액과 임금항목, 노동시간 등으로 구성됨.

2. 조사결과 개요

1) 2018년 저임금 조합원 평균 임금액과 상대적 수준

[표-2] 2018년 저임금 조합원 임금액과 임금 항목별 비중(단위: 원, %)

항목			금액	비중 ¹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포함)			2,159,722	106
임금총액(초과근로수당 제외)			2,036,933	100
기본급			1,654,000	81.2
기본급+통상수당			1,755,235	86.2
기본급+통상수당(보정) ²			1,766,758	86.7
통상수당	소계		100,825	4.9
	①	직무·직책·직급수당	18,371	0.9
		그 외 통상수당 ¹⁾	922	0.0
	② ²⁾	생산수당	16,595	0.8
		(직무)능력급	64,936	3.2
근속수당			47,715	2.3
복리후생	소계		136,497	6.7
	급식비		84,869	4.2
	통근비		13,406	0.7
	숙박비		0	0.0
	가족수당		10,758	0.5
	학비보조		27,464	1.3
초과근로수당			122,789	6.0
연월차수당			61,211	3.0
그 외 기타수당			55,361	2.7
상여금	소계		95,834	4.7
	정기상여금	①매월 1회 이상(월할)	1,548	0.08
		②기타(격월, 분기 등)	24,327	1.2
		①+②	25,875	1.3
	명절상여금		57,657	2.8
	성과상여금		12,303	0.6

주 1) 비율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대비 상대적 수준임.

2)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은 2018년 5월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임. 다만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 후 체불임금이 정산될 예정임. 따라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1) 저임금 조합원이 받는 기타 통상수당으로는 생산(장려)수당(3명), 조정수당(3명), 벽지수당(1명) 등이 있음.

2) 한편 제빵기사와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각각 '생산수당', '(직무)능력급'이란 명칭의 통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임금 조합원들의 2018년 월 기본급은 1,654,000원,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기본급+ 통상수당」은 1,766,750원(원단위 절사),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은 2,036,930원(원단위 절사)임.

- (초과근로수당 제외) 임금 총액 대비 기본급과 현행 산입범위 기준 「기본급+ 통상수당」의 상대적 수준은 각각 81.2%, 86.7%임.

○ 임금 총액(초과근로수당 제외) 대비 통상수당 비중 4.9%, 복리후생수당 비중 6.7%, 상여금 비중 2.7%임.

2) 2018년 임금항목별 수령 조합원 수 및 금액

[표-3] 2018년 임금항목별 수령 조합원 수 및 금액(단위: 명, %, 원)

			수령 조합원		수령 금액	
			수	비율	평균금액 ¹	비중 ²
통상수당	계		163	27.1	100,825	4.9
	통상수당①	직무·직책·직급수당	148	24.6	18,371	0.9
		그 외 통상수당 ³⁾	7	1.2	922	0.05
	통상수당②	생산수당	23	3.8	16,595	0.8
		(직무)능력급	58	9.6	64,936	3.2
근속수당			203	33.7	47,715	2.3
복리후생	계		514	85.4	136,497	6.7
	급식비		485	80.6	84,869	4.2
	통근비		137	22.8	13,406	0.7
	숙박비		0	0.0	0	0.0
	가족수당		159	26.4	10,758	0.5
	학비보조		110	18.3	27,464	1.3
초과근로수당			275	45.7	122,789	6.0
연월차수당			354	58.8	61,211	3.0
그 외 기타수당			269	44.7	55,361	2.7
상여금	계		549	91.2	95,834	4.7
	정기상여금	①매월 1회 이상(월할)	3	0.5	1,548	0.08
		②기타(격월, 분기 등)	128	21.3	24,327	1.2
		①+②	131	21.8	25,875	1.3
	명절상여금		537	89.2	57,657	2.8
	성과상여금		70	11.6	12,303	0.6

주 1) 평균금액: 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 전체 숫자로 나눈 평균 값

2) 수령금액 비중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 대비 상대적 수준

(1) 급식·통근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

- 응답 조합원의 85%가 복리후생적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136,490원(원단위 절사)으로 조사됨. 임금총액 대비 비중은 6.7%임.
- 복리후생적 수당의 항목별 수령 비율이 높은 순서는 급식비(81%) → 가족수당(26%) → 교통비(23%) → 학비보조(18%) 등으로 나타남.
- 급식비의 경우, 응답 조합원의 81%가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84,860원(원단위 절사)임. 급식비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급받고 있을 정도로 대다수 저임금 조합원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4.2%임. 한편, 31개 사업장에서 점심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 통근비의 경우, 응답 조합원의 23%가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13,400원(원단위 절사)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0.7%임. 한편, 11개 사업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숙박비의 경우, 응답 조합원 중에는 수령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음. 다만 이주노동자들은 숙박비 사전 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족수당은 급식비, 통근비와 더불어 상당수 저임금 조합원들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 조합원의 26%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금액은 월 10,750원(원단위 절사)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0.5%임.

(2) 상여금

- 상여금은 응답 조합원의 91%가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환산 95,830원임.⁴⁾ 임금 총액(초과근로수당 제외) 대비 비중은 4.7%임. 한편 수령자만 따로 계산할 경우 월 환산 금액은 105,080원임.

3) 저임금 조합원이 받는 기타 통상수당으로는 생산(장려)수당(3명), 조정수당(3명), 벽지수당(1명) 등이 있음.

4)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월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명절 상여금은 절대 다수 저임금 조합원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응답 조합원의 89%가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환산 57,650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2.8%임.
- 매월 지급되는 (월할) 정기상여금을 수령하는 저임금 조합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격월·분기·반기 등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수령하는 조합원 비중은 응답 조합원의 21%(128명)였으며, 월 환산 금액은 24,327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1.2%임. 한편 월할과 격월·분기 등 모든 정기상여금의 경우, 22%(131명)가 지급받고 있으며, 월 환산 평균금액은 25,870원임. 수령자만 따로 계산할 경우 월 118,900원에 달함.
- 성과 상여금은 응답 조합원의 12%가 지급받고 있으며, 월 환산 금액은 12,300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0.6%임.

[표-4] 상여금 종류별 수령 조합원 수 및 금액(단위: 명,%,원)

	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월할	격월·분기 등	소계		
조합원수	549	3	128	131	537	70
수령 비율	91.2	0.5	21.3	21.8	89.2	11.6
평균금액① ¹	95,834	1,548	24,327	25,875	57,657	12,303
평균금액② ²	105,086	310,629	114,413	118,906	64,635	105,803
임금총액 대비 비중 ³	4.7	0.08	1.2	1.3	2.8	0.6

주 1) 평균금액 ①은 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 전체 숫자로 나눈 금액

2) 평균금액 ②는 수령자 숫자로만 나눈 금액

3) 임금총액은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평균금액①의 비중

(3) 근속수당

- 1개월 초과기간 계속근무에 대한 수당인 ‘근속수당’의 경우, 응답 조합원의 34%(203명)가 수령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47,710원으로 조사됨.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2.3%임.
- 한편 1개월 초과기간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의 경우, 응답 조합원 중 단 2명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통상수당

① 직무·직책수당

- 가장 대표적인 통상수당이며,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직무·직책수당을 수령하는 저임금 조합원은 163명(27.1%)이며, 월 평균 수령금액은 100,820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4.9%임.
- 한편 사실상 기본급 성격인 ‘(직무)능력급’(마트 노동자), ‘생산수당’(제빵기사 노동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수령 비율은 25.2%(152명)이며, 월 평균 수령금액은 19,290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중은 0.9%임.

② 기타 통상수당

- 응답자 중 생산장려수당, 벽지수당, 위험수당 및 조정수당 수령자 등이 있지만, 극소수 조합원만이 지급받고 있음. 수령 비율은 1.2%(7명)이며, 금액은 920원임. 임금 총액 대비 비율은 0.05%임.
- 제빵기사 노동자의 ‘생산수당’, 대형마트 노동자의 ‘(직무)능력급’ 등의 통상수당은 사실상 기본급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소결

- 저임금 조합원 임금구성은 중위임금 이상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직무, 직책, 생산장려, 위험수당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2~5개의 수당이 덧붙여지는 수준임.
- 실비변상적, 일시간혈적 수당을 제외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구성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정기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됨.
-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수령자가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명절 상여금(89%)

→ 급식비(81%) → 연월차수당(59%) → 근속수당(34%) → 직무수당(27%) → 가족수당(26%) → 교통비(23%) → 정기상여금(22%) → 학비보조(18%) 등인 것으로 조사됨.

○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월 평균 수령 금액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급식비(84,860) → 연월차수당(61,210) → 명절 상여금(57,650) → 근속수당(47,710) → 학비보조(27,460) → 정기 상여금(25,870) → 직무수당(18,370) → 통근비(13,400) 등인 것으로 나타남. (원단위 절사)

[그림 1] 저임금 노동자 주요 임금 항목과 수령 비율(단위:%)



[그림 2] 저임금 노동자 주요 임금 항목과 수령 금액(단위:원, 월평균)



3. 산업범위 확대 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첫째, 산업범위 확대가 어느 정도 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지와 둘째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산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동하는 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함.
- 다만 산업범위 확대의 간접적 영향까지 분석하기에는 기술적 곤란함이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적 효과에 한정하여 분석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 첫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은 15%, 10%, 5% 등 세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계산함.
 - 둘째, 산업범위 확대 시나리오는 △ ‘현행 + 정기상여금 + 급식·통근비’ △ ‘현행 + 정기상여금 + 근속수당’ △ ‘현행 + 정기상여금’ 등 세 가지로 가정함.
 - 셋째, 산업범위 확대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 수·비율은 현행 산업범위 기준으로는 차기 년도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산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조합원 수와 비율로 계산함.
 - 넷째, 임금 삭감액과 비율은 ① ‘현행 산업범위 기준 차기 년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② ‘현행 산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산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구함. ③ 이를 ‘현행 산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금액 합계’로 나눠 삭감율을 구함.

2) 임금인상 삭감 효과

- 산업범위 확대에 의해 어느 정도 임금인상 삭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도록 함. 분석 방법은 임금 삭감액과 비율은 ① ‘현행 산업범위 기준 차기 년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② ‘현행 산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산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구함. ③ 이를 ‘현행 산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인상 금액’으로 나눠 삭감율을 구함.

- 한편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사용자는 격월·분기·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현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수당·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사용자의 탈법·불법적 꼼수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함. 따라서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정하여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임.

[표-6]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임금 인상 삭감율(단위: %)

	15% 인상	10% 인상	5% 인상
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51.3	54.3	76.3
현행+정기상여금+근속수당	29.0	29.4	17.5
현행+정기상여금	10.6	16.3	12.6

주 1) 임금 인상 삭감율은 ‘현행 산입범위 기준 차기 년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어 구함.

(1)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96.8%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51.3%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65.3%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54.3%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45.5%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76.3%임.

(2)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96.8%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29.0%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65.3%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29.4%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45.5%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 합계’로 나누면, 삭감율은 17.5%임.

(3) 현행 + 정기 상여금

-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정하여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96.8%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급 인상 금액’으로 나누면, 삭감율은 10.6%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65.3%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인상 금액’으로 나누면, 삭감율은 16.3%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①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45.5%임. ②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과 「현행 + 정기 상여금」 기준 시급 인상액의 격차 총액을 ‘현행 산입범위가 유지되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인상 금액’으로 나누면, 삭감율은 12.6%임.
- 한편 정기 상여금의 경우, 22%의 저임금 노동자가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자로만 계산한 평균 금액이 114,410원에 달함. 따라서 정기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수령자들은 매우 큰 폭의 임금 삭감을 당할 것으로 예상됨.

3)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 비율

- 산입범위 확대 관련 각 시나리오별로 현행 산입범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과 확대된 산입범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간의 격차를 분석함. 이 격차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되는 비율을 의미함.

[표-7]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추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변화(단위: %, %p)

	15% 인상			10% 인상			5% 인상		
	현행	①	격차	현행	②	격차	현행	③	격차
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①	96.8	45.0	-51.8	65.3	41.7	-23.6	45.5	27.6	-17.9
현행+정기상여금+근속수당②	96.8	73.1	-23.7	65.3	39.4	-25.9	45.5	30.4	-15.1
현행+정기상여금③	96.8	94.0	-2.8	65.3	55.3	-10.0	45.5	45.5	-11.4

주 1)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격차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되는 비율을 의미

(1) 현행 + 정기 상여금 + 급식·통근비

- ‘정기상여금’은 매월·격월·분기·반기·매년 등 모든 형태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며, 여기에 추가로 ‘급식통근비’가 포함될 경우,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도록 함.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임.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0%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51.8%p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5.3%임.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1.7%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23.6%p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5%임.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27.6%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17.9%p임.

(2) 현행 +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은 매월·격월·분기·반기·매년 등 모든 형태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며, 여기에 추가로 ‘근속수당’이 포함될 경우, 임금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노동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함.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임.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73.1%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23.7%p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5.3%임.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39.4%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25.9%p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5%임.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30.4%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15.1%p임.

(3) 현행 + 정기 상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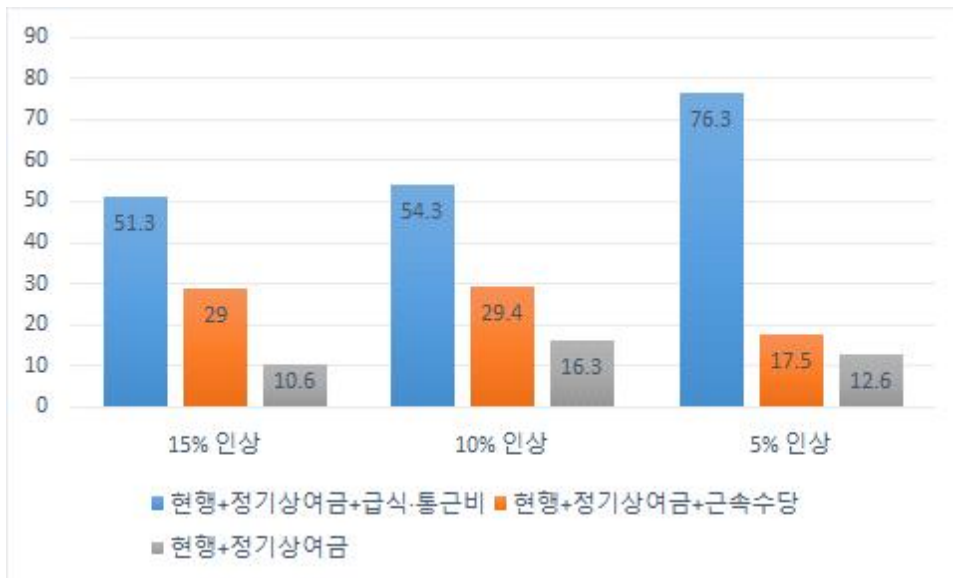
- 상여금은 크게 정기·명절·성과 상여금으로 구분되며, 현재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여금은 정기 상여금임.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여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함.
- 15% 인상(시급 8,660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임. 정기상여금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94.0%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2.8%p임.
- 10% 인상(시급 8,283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5.3%임. 정기상여금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55.3%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10.0%p임.
- 5% 인상(시급 7,907원) 되었을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5%임. 정기 상여금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34.1%로 줄어듦. 양자간 격차는 -11.4%p임.

4. 요약 및 결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 삭감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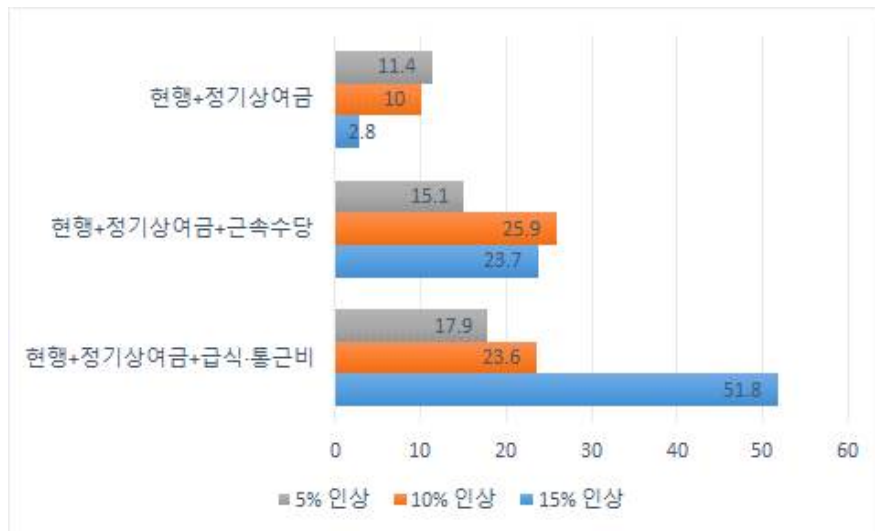
- 첫째,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15%로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현행+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51.3%(현행+ 정기상여금+ 급식·통근비)까지 삭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행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확대하는 경우, 임금 삭감율은 51%를 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정기상여금의 경우, 4~5명 중 한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자 평균 금액이 114,410원에 달해서, 정기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수령자들의 임금삭감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산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임금 인상 삭감율(단위: %)



- 둘째,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15%로 가정했을 때, 추가 임금 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 비율은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나타남. 현행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를 포함했을 때는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시나리오별 세부적인 비율은 2.8%(현행+ 정기상여금), 51.8%(현행+ 정기상여금+ 급식·통근비), 23.7%(현행+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임.

[그림 4] 산업범위 확대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격차(단위: %p)



○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구성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정기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됨.

- 첫째,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수령자가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명절 상여금(89%) → 급식비(81%) → 연월차수당(59%) → 근속수당(34%) → 직무수당(27%) → 가족수당(26%) → 교통비(23%) → 정기상여금(22%) → 학비보조(18%)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둘째,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월 평균 수령 금액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급식비(84,860) → 연월차수당(61,210) → 명절 상여금(57,650) → 근속수당(47,710) → 학비보조(27,460) → 정기 상여금(25,870) → 직무수당(18,370) → 통근비(13,400) 등인 것으로 나타남. (원단위 절사)